P.R

자체 통제	기안처	건설국하수과 임봉호	전화번호 3-9507	근거서류접수일자

치수담임	하수과장	건설국장	부시장	시장
	6/11	6/11	6/13	

관계 관서명	법무 문서	시정과장 총무과장	내무국장	기획조정관

기안 년월일	63. 6. 11.	년월일	63. 6. 15	보존 년한	

분류 기호	서검하 139	전체통제		종결		정서	기장

경유 수신 참조		발신	

제목 1963 사유지 개간예정지 제2차 결정고시

1. 다음 미간지는 개간촉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 동 4조 규정에 의거 당시 개간심의회에서 개간적지로 심의되었음으로 개간 예정지로 결정하고 동법제6조에 의거 별안과 같이 고시하고저 합니다.끝

안 2 "고 시 안"

서울특별시고시제 765 호

개간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지 개간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함.

서기 1963년 6월 일

서울특별시장 윤태일

1.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지적 및 소유자 성명.

토지의소재지		지목	지번	지적	개간예정지 결정면적	토지이용예정의 개요	공사비 계산액	예정보조율	토지대가 예정액	토지소유자 성명
구	동									
영등포	신림	임	산 90	정 3.01	정 1.26	전	원 26,912	5할 이내	원 37,900	성북구안암동5가15-55 이 만 복

끝.

안 3 "고 시 의 뢰 안"

수신	공 보 실 장	발신	건 설 국 장
제목	1963사유지 개간예정지 제 2 차 결정고시 의뢰		

사유지 개간예정지를 결정하였으니 고시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유첨 고시문 1 부 끝.

안 4 "통 지 안"

수신	성북구 안암동 5 가 15-55 이 만 복	발신	서울특별시장
제목	사유지 개간예정지 결정 통지서		

1. 귀하의 소유인 별지 표시의 토지에 대하여 개간예정지로 이를 결정하였기 개간촉진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가. 귀하가 개간허가를 받고자 하시는 개간촉진법제 8 조의 규정에 의거 63. 7. 29. 까지 당시에 개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시 바랍니다.

나. 본 기한내 제출치 않을시는 재간의사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동법제9조의 제14조에 의거 정부가 매수허가 함것임.

유첨 고시문 1부 끝.